

-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# 검 토 보 고

## 1. 제안경위

가. 제출자 : 송아량 의원 외 9명

나. 의안번호 : 제1414호

다. 제출일자 : 2020. 4. 3

라. 회부일자 : 2020. 4. 8

## 2. 제안사유
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은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전통시장과 상권활성화구역에 있거나 이웃한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조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, 이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제7조제1항제9호도 구매 영수증을 제시하는 경우 2시간의 범위에서 50%를 할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.
- 그런데 같은 조례 제7조제1항제6호에서는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한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때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30%를 할인한다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중복될 뿐만 아니라, 전통시장 인근의 주차장이 아닌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할인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하는 차량에 대한 중복된 할인 규정을 삭제함(안 제7조제1항제6호 삭제).
- 나.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구매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의 주차요금 할인 규정에서 시장의 고시 요건을 삭제함(안 제7조제1항제9호)

#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주차장법」, 「도시교통정비촉진법」,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입법예고
  - 기 간 : 2020. 4. 13 ~ 4. 21
  - 제출의견 : 없음
- 라.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
  - 서울시장(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) : 수정동의
    - 6호 삭제 및 제9호 조문 개정으로 할인 가능한 공영주차장을 ‘전통시장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 있거나 이웃한’ 주차장으로 한정하게 되면, 전통시장 이용시민이 할인 받을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현재보다 축소됨
    - (현재) 전체 공영주차장 134개소 중 1급지 공영주차장(39)을 제외한 95개 모든 공영주차장이 할인 가능
    - ※ 6호에 따라 전통시장 이용시 모든 공영주차장(1급지 제외)을 30% 할인 가능

- (개정) 9호 개정(안)에 따라, 전통시장 반경 200m로 확대 하더라도 시민이 할인 가능한 공영주차장은 17개소로 기존 대비 82% 축소됨

※ 전통시장 반경 200m 기준 사유

- ▶ 전통시장으로 부터 100m이내 고시한 공영주차장이 있으나 최근 3년간 감면 실적이 없음  
(전통시장 이용자의 높은 연령 층 등으로 대부분 전통시장 이용시 차량 이용하지 않음)
- ▶ 이용 가능한 공영주차장 반경을 최대 200m 예측하여, 산정

- 또한, 9호 개정안 ‘이웃한’ 의미가 불명확하여 할인 적용대상 주차장에 대한 객관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시민에게 재고시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절차가 수반되는 문제 발생
- 전통시장 감면 조항을 정비하는 것에는 동의하나, 기존 조례안 대비 할인 공영주차장이 축소되지 않도록 9호 조항 수정 요청 및 복잡한 도심권 교통수요(녹색교통지역) 관리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‘1급지 제외’ 단서조항 유지 필요
- 1급지 공영주차장 39개소 중 32개소가 녹색교통지역 4대문안에 있음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한 차량에 대한 중복할인 규정과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 구역의 구매영수증을 제출한 경우의 주차요금 할인 규정에서 시장의 고시 요건을 삭제하는 등 할인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

#### 【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통시장 이용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현황】

구분	조항	조문내용
현행 조례 제7조 제1항	6호 (1급지를 제외한 전체 공영주차장 <b>30% 할인</b> )	· 시장은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한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때에는 해당 <b>주차요금의 30%를 할인</b> . 단, 1급지 공영주차장 제외 ※ 전통시장 이용시 모든 공영주차장 요금 30% 할인
	9호 (전통시장 100m내 공영주차장 <b>50% 할인</b> )	·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 인근에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구매영수증을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<b>최초 2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100분의 50 할인</b>

### 나. 검토 의견

-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7조제1항6호 및 9호에서 각각 정의하고 있는 전통시장 이용차량의 공영주차장 할인 금액이 각각 30% 및 50%로 상이하고, 적용기준이 다른 점을 개선하기 위해
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.)제 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 구역<sup>1)</sup>과 이웃한 전체 공영주

1)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차장을 이용한 경우 등에 대해 최초 2시간까지의 주차장 이용요금 50%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임

- 법 제19조2)에서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시장 등의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, 동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장에서 감면 기준 적용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고, 전통시장 이용활성화에 일부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
- 다만, 서울시 전체 유료 공영주차장<sup>3)</sup> 122개소 중 현행 조례 제7조제1항6호에 따라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30%를 할인받는 공영주차장은 91개소이며, 9호에 따라 50% 감면받는 공영주차장 수는 1개소이나

---

1. "전통시장"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·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,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"시장·군수·구청장"이라 한다)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.

가.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

나.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

다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

4. "상권활성화구역"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.

가.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

나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

다.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·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

라.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

2) 제19조(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장등의 상인 및 고객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(시장이나 상권활성화구역에 있거나 이웃한 것만 해당한다)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 「주차장법」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3) 전체 공영주차장 개소는 134개소이며 이 중 유료는 122개소, 무료는 12개소임

동 조례개정 이후 전통시장과 이웃한 주차장 범위를 현재 보다 2배 넓은 200m로 확대하더라도 50% 할인받는 주차장 수는 17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할인혜택을 받는 공영주차장 수는 오히려 감소하게 될 소지가 있음

**【조례개정에 따른 대상 서울시 공영주차장 현황】**

구 분		계	1급지	2급지	3급지	4급지	5급지	비 고
개정 전	제7조 제1항 제6호 대상(30%감면)	91	-	26	37	25	3	유료주차장 중 1급지 31개소 제외
	제7조 제1항 제9호 대상(50% 감면)	1	-	1	-	-	-	독립문고가길 주차장
개정 후(50%감면)		17	12	2	2	1	-	전통시장과 200m내 이웃한 공영주차장 대상

※ 급지별 서울시 유료 공영주차장('20.4. 기준)

- 또한 동 개정조례안은 1급지<sup>4)</sup>에 있는 공영주차장 12개소에 대해서도 할인하도록 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에 일부 기여할 수 있으나 4대문 주변, 강남·서초, 신촌 등 도심과 부도심으로 구성된 1급지에 대해서는 자동차 이용을 줄여 도심 교통혼잡을 줄이고자 하는 서울시 교통정책과 상충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
- 아울러, 최근 3년간 전통시장 이용 이후 공영주차장 요금을 감면 받은 사례<sup>5)</sup>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차요금 감면정책이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

4)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1

- 1급지 : 4대문 주변, 신촌, 영등포, 강남·서초, 잠실, 천호, 청량리, 용산·마포, 미아, 목동지역

5) 요구자료 194번 : 주차장 요금 감면 조례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9호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내역 자료요청에 대해 서울시는 '최근3년간 시 공영주차장에서 요금 감면 받은 내역 없음'으로 자료를 제출함